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39, pp.173-181
<https://doi.org/10.29212/mh.2026..139.17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군사사 신진연구]
『6·25전쟁기 미군 제8240부대의
한국인 유격대 운영과 휴전 후
국군 편입 과정의 교훈 연구』를 말한다

이동욱 |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연구원

- 목 차
1. 집필 동기
 2. 자료 수집과 분석
 3. 논문의 주요 내용
 4. 감사의 말

1. 집필 동기

필자는 2016년에 북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러나 주제 선정에 관한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논문 집필은 점점 요원해졌다.

이러한 현실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은 2021년 여름이었다. 4월에 공포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보상 준비 TF에 뜻하지 않게 합류한 것이다. 자료지원담당으로 합류해 보니 몇 권의 전사(戰史) 외에는 변변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 몇 권의 책만으로는 보상 대상인 미군 제8240부대 유격대(이하 ‘유격대’)나 KLO(Korea Liaison Office)가 무엇이라는 정도밖에 알 수 없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보상에 앞서 당시 작성된 사료 수집이 우선 과제로 부상하였다.

먼저 유격대가 휴전 후 국방부 제8250부대를 거쳐 육군에 편입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육군에 편입된 유격대원의 병적 자료를 통하여 유격대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방대한 병적 기록을 일일이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쉽지만은 않았다. 다행히 육군 기록정보관리단과 국가기록원 등에 흩어져 있는 인사명령 등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육군 편입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었다. 육군에 편입되지 않았으나 1950년대 말부터 약 10년의 구제 조치를 통하여 병적에 등록된 유격대원이 남아 있었다. 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의 ‘중군자 복무조정’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 여기에는 1966년 병적 등록자의

명단과 제도 시행에 관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자료를 검토하여 일부 유격대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문서에 따르면 1962년에도 중군자 복무조정이 시행되었으나, 당시 구제된 사람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득 앞서 입수한 “8240부대원 명단”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단이 6·25전쟁 중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하여 명단과 “육군본부 특별명령(병제대) 제183호”에서 중첩되는 185명이 유격대 출신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필자는 유격대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결심하게 되었다. 실무자의 분석이 아무리 정확하여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인정을 받기 힘들 것이며, 새롭게 확인된 사실을 보상 업무에만 활용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결국 뜻하지 않게 참여한 비정규군 보상 업무는 북한학을 전공한 필자가 6·25전쟁사 연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2024년 가을부터는 수년간 고심만 거듭하던 논문의 주제를 “6·25전쟁기 미군 제8240부대의 한국인 유격대 운영과 휴전 후 국군 편입 과정의 교훈 연구”로 정하고 집필에 착수하였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논문을 집필하기 전에는 업무를 위하여 수집한 유격대 관련 자료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업무는 몇 가지 자료를 조사, 분석, 비교를 통한 결과 도출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활용되는 자료의 범위가 비교적 좁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집 자료

만으로는 유격대의 역사 전반을 고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집필에 앞서 자료 수집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6·25전쟁 중 유격대에 관한 자료는 거의 유격대를 운영하였던 미군이 작성한 것들이었다. 당시 유격대는 한국군 소속이 아니었으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유격대의 행정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국립공문서관(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등의 소장 자료를 직접 검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과 거리의 제약보다 큰 문제는 소장 자료의 분량이 방대하다는 점이었다.¹⁾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미국 국립공문서관의 문서를 수집, 디지털화한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방대한 자료 중 한국과 관련 있는 자료만을 선별해 두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로 극동군사령부·연합군총사령부·유엔군사령부 문서로 구성된 RG 554, 부관참모부 문서인 RG 40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 작전, 전술 및 지원 기관에 관한 RG 338을 주로 참고하였다. 또한 노근리 사건 관련 문서철인 NO GUN RI FILE에서도 일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기존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1950년 7월 극동군사령부의 유격전 타당성 검토 결과, 휴전 후 유격대원을 한국 육군에 편입하는 퀵실버(Quick Silver) 작전 계획, 이후 유격대를 대체할 제8731부대 창설에 관한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기록은 휴전 후 유격대의 국방부 제8250부대로 편입으

1) 미국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된 122억여 페이지의 자료 중 약 3.8%에 해당하는 4억 6천만여 페이지가 인터넷에 탑재되어 있다. 미국 국립공문서관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archives.gov/findingaid/record-group-explorer>, 2026. 5. 7. 검색)

로부터 육군으로 분산 배치되기 전까지 유격대 자체 기록과, 1950년대 후반 중도 이탈자 등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관한 기록, 육군의 병적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방부 제8250부대의 문서는 주로 제2유격연대에서 작성한 것으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역사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이때의 문서들은 주로 제8250부대와 유격연대, 예하 부대 간에 주고받은 각종 지시문서와 현황보고 등으로, 휴전 이후 유격대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후 중도 이탈자 등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는 국방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치의 배경, 논의 사항, 심사 및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당시 신문 기사와 휴전 이후 발간된 부대별 전사(戰史) 및 증언 자료 등도 논문 집필에 활용되었다. 이 자료들은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거나 정확한 사실의 전달에는 일부 과장,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1차 사료를 부연하거나 미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보강하는 용도로 활용하였다.

3. 논문의 주요 내용

본 논문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6·25전쟁기 유격전 사례를 통한 교훈 도출을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은 전쟁 중 유격대 운영, 정전 후 육군 편입 과정, 이후 중도 귀가자 등 병적 불확실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관한 고찰에 기초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논문의 토대가 되는 세 가지 역사적 사실을 위주로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6·25전쟁 중 유격대의 운영을 고찰하였다. 유격전은

1951년 2월 15일, 미 제8군 작전참모부 예하 지구전과(Attrition Section)의 통제하에 개시되었다. 백령도 현지 작전기지 사령부인 윌리엄 에이블기지(William Able Base)와 유격대인 동키 제1부대, 부산 근교에서 공수 훈련을 담당할 베이커 지역(Baker Section) 기지가 출발점이었다. 이후 유격대 규모가 확장되면서 적 후방 정보 기구들과의 마찰이 잦아졌다. 이에 같은 해 12월 10일부로 유격대도 미군 제8240부대 주한 연락파견대(FEC/LD(K))의 통제를 받으면서, 정보 기구들과 단일 지휘 체계 아래 활동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6개의 작전기지 사령부의 통제하에 약 40개의 유격대에 2만 5천여 명의 대원이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전쟁 중 이들이 수행한 첩보 수집, 파괴 활동 등의 소규모 작전 위주의 임무는 4,400여 회에 달한다.

유격대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6·25전쟁 중의 유격전을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정전회담이 시작된 후에도 후방 교란을 하다가 복진하는 유엔군을 지원한다는 운영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여 전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미군의 평가가 유격전 통제기구에만 국한된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한 유격대는 다르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당시 유격대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다수의 공산 측 병력이 후방에 배치되었고, 주민 신고를 독려하는 북한의 반응만 보아도 그들의 임무는 성공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전 이후 유격대의 국군 편입과 육군으로 분산 배치 과정에 관한 고찰로, 유격대원의 육군 편입 현황도 함께 규명하였다. 정전회담의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제외한 38도선 이북 유엔군 점령 도서 반환 협의에 따라 1953년 7월 26일 24시부, 모든 유격대는 38도선 이남으로 철수하였다. 이로써 유격대의 임무는 종료되었으나 갈 곳 없던 북한 출신 유격대원들을 위하여 국방부에 제

8250부대가 창설되었다. 부대는 휴전 후 발생 가능한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예비전력으로 유격대를 보유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부대는 1954년 1월 8일부 육군본부로 이관되어 해체를 준비하였다. 미군은 이러한 조치에 반발하였으나 이들을 대체할 제8731부대를 창설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유격대원의 육군 편입은 본격화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격대원들은 5~7명씩 소그룹으로 편성되어 각급 부대에 분산 배치되었다.

육군에 편입된 1만 1천여 명 중 753명은 장교로 임관하였는데, 25명만 임시 소령 또는 대위로 임관하였을 뿐 나머지는 임시 중위 또는 소위로 임관하였다. 나머지 1만여 명은 현재의 하사 이하 계급을 부여받았으나, 대부분 유격대 복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78%가 이등병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비한 행정으로 이들의 병적 정리는 1953년 12월에서야 완료될 수 있었다. 그마저도 한 명에 두 개의 군번을 부여하거나 하나의 군번을 여러 명에게 부여하는 등의 오류가 빈발하여 그동안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당시 11,760명의 유격대원이 육군에 편입된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중도 귀가 등의 사유로 병적에 등록되지 않았던 소위 ‘병적불확실자’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분석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부의 대응 과정을 고찰하면서 구체적 현황도 함께 규명하였다. 전쟁 중 민간인이었던 유격대원 중 휴전 후 육군에 편입된 1만 1천여 명 외에는 여전히 병역의무가 남아 있었다. 특히 1957년 학도의용군 출신의 병역의 무만을 면제하는 차별적인 「병역법」 개정은 18만여 명의 민간인 참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국방부가 이들의 청원을 수용하면서 1957년부터 4년간 제1차

복무조정을 시행하였으나 1만 명이 넘는 유격대 출신 대상자 중 565명만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병역기피자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했다는 점과 국방부의 소극적인 자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병역기피 풍조가 쇠퇴하면서 병적불확실자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고, 1962년 국방부는 종군자 복무 재조정의 시행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격대 출신 지원자 3,360명 중 185명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두 번의 조치로 병적불확실자 문제를 해소할 수 없었던 국방부는 1966년 제2차 종군자 복무 조정의 시행을 결정하였다. 다소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 결과 1962년도 심사에 불합격한 990명 중 622명이 추가로 심사에 통과하였다. 이후 국방부는 남아 있는 병적불확실자들이 입대 적령을 초과했다고 판단하여 구제 조치를 중단하게 되었다. 일련의 과정을 고찰하면서 전쟁 중 미비한 행정이 양산한 수많은 병적불확실자의 처리를 위한 정부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미군 제8240부대 유격대원의 휴전 후 육군 편입 과정, 중도이탈자 등의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 일련의 조치를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한적인 여건으로 휴전 후 유격대의 처리를 위한 한미 군 당국의 구체적 합의사항 등을 제대로 정리할 수는 없었다.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4. 감사의 말

먼저 6·25전쟁 참전자로서,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유격군전우회 박충암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논문 집필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많은 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었다. 논문 집필 지원은 표면적으로 주제 선정 지원 때문이었으나, 그 이면의 일과 학업 병행에 따른 심적 부담도 함께 작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연구가 곧 업무라고 하면서 독려해 주신 오춘화 서기관님과 퇴직하신 용승일 서기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영택 지도교수님께서서는 8년여 만에 선정된 주제로 집필하게 된 논문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다. 진종구 교수님, 유판덕 박사님, 김재엽 박사님, 문계성 박사님께서서는 논문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셨다. 바쁜 업무 중에도 논문을 읽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준 이중경 조사관과 이재익 선배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믿고 응원해 주는 가족들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부족한 논문에 관심 가지고 지면을 통하여 널리 알릴 기회를 주신 『군사』지 편집위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연구로 보답하겠다.